

남북 기소장과 법정표현(프리젠테이션)

남북이 함께 기소장을 내자는 의견은 마닐라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남북이 일제치하에서 같은 경험을 하였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범죄행위를 추궁하는데 굳이 달리 할 필요가 없었기에 합의는 쉽게 되었던 것 같다. 문제는 준비과정을 얼마만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처음 남측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중간에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닐라 이후 대만회의가 공식적인 회의로서 마지막이었다, 다만 남북 기소장의 틀은 대만회의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 대장의 합의 내용을 적어보면

1. 형식적인 전체 틀은 유엔 보고서양식과 같이 논문 스타일이 아니라 각 문단을 일련번호로 처리하고 남측에서 준비한 기소장 내용은 대부분 부록으로 처리한다.
2. 내용에서 역사적 배경과 위안부 총수 추정에 대한 것은 북측에서 쓴다.
3. 강제연행과 위안소의 내용과 개인책임 부분은 남측에서 쓴다. 다만 북측 피해자 자료를 정리해 넣는다.
4. 국가책임부분은 북측에서 정리한다.

법정 일정 전에 남북측 교류는 우리측 기소장 초안과 북측 역사적 배경 등의 자료가 한번 일본을 통해 팩스로 오고 갔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을 시키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남북 기소장이라고는 해도 남측 기소장 작성이 법정이 열리는 시점까지 갔고 법정이 열리기 직전인 12월 6일 밤에 서로 만났으나 기소장 내용보다는 법정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바빴고 기소장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 결국 8일 법정 표현이 끝난 이후가 되어서야 북측의 기소장에 대한 이견을 듣고 이것을 반영하고 또 기소장에 따른 자료목록과 자료정리작업 그리고 그 영역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8일 첫 번째로 법정 표현을 한 이후 법정이 끝나는 날 12일까지 남북 검사단측 모두 기소장 마감작업에 시달렸다.

최종 남북 기소장을 구성(이외에 대단한 부피의 부록이 있다)만 소개하면,

1부 개인책임

기소장

1. 법정 피고 8명(천황 히로히토, 수상 및 육상 도조 히데키, 조선총독 미나미지로,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 제11군사령관 및 지나군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 관동군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 제21군사령관 및 대만총독 안도 리키치, 제56사단 사령관 마츠야마 유조)

2. 배경

- 1) 일본의 조선강점
- 2)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정책
- 3) 조선민족에 대한 착취와 약탈
- 4) 일제말기 조선여성의 처지
- 5) 침략전과 일본군위안소 :지역적 분포

3. 피고 약력과 책임

4. 일반적 주장: 법정 현장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두 죄목을 적용

범죄사실

1. 조선인 위안부 강제동원
2. 조선인 위안부의 위안소로의 강제이송
3. 위안소에서 저질러진 범죄
강간, 고문과 군인에 의한 의도적 상해, 노예화, 학대, 살해, 기타 비인도적 행위
4. 패전 직후 저질러진 범죄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남은 고통과 손상

2부 국가책임

1. 사실관계
2. 국가책임부인
3.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일본책임의 법적 근거
 - 1) 국제인도법 위반
 - 2)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국제법 위반
 - 3) 여성과 어린이 매매에 대한 국제법 위반
 - 4)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법 위반
 - 5) 국제범죄법 위반? Viol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 6)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인권침해에 관하여
 - 7)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의문
4. 요구사항

남북 기소장팀의 또하나의 고충 중의 하나가 처음부터 작업을 연구자(법학자가 있었지만)가 진행시켰다는 점이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변호사 등 법정일을 하는 법률가들이 틀짜기를 하고 연구자들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연구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들어간 것에 비해 우리는 변호사가 관여하긴 하여도 아주 부분적이었다. 법정 행사에 대한 이해나 구상도 할머니들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있다는 식으로 소박하게 생각하였다. 기소장을 써 본 적이 없는 이들이 한국측의 국제법정 이미지로 진행시켰고 국제적 요구에 대해서도 거의 막판까지 자기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법정 표현에 대해서도 연구발표와 같은 생각이 일각에 있었다. 이 때문에 법정 시나리오를 맡는데 있어서도 주제별로 연행, 위안소 생활, 패전전후사정, 귀국 후 후유증, 법적용(개인형사책임, 국가배상책임) 방식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것은 법정표현을 하는데 적절한 형식은 아니었다.

북측과의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성과 북측이 중복되거나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전체 3시간 중 북측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발표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것은 법정에 대한 우리의 준비방식과 북측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조정하여 주제별로 하되 남북준비를 서로 엮어서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법정 표현은 전체 도입(박원순), 역사적 배경(홍선옥), 연행(전체적 설명은 남측 하 중문, 비디오는 북측), 각 피해자(박영심, 하상숙, 김영숙, 문필기, 김복동) 증언(비디오증언도 포함)과 위안소 생활 정리(황호남, 강정숙), 패전 직후 및 후유증(육체적 후유증 북 김은영,

정신적 후유증 남 양현아), 법적용(개인형사책임 남 조시현, 국가책임 북 정남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진행에서 파워포인트로 주요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여 무대 양쪽의 대형스크린에 비추게 하고 현장 증언, 비디오증언을 곁해서 진행하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관련자료에 대한 파워포인트 작업은 재일동포와 일본측 관련자의 도움도 컸다.

법정 표현과 관련하여 이쉬웠던 것은 첫째는 법정이란 틀 때문에 생겨났다. 처음 법정을 생각했을 때 한국측 생각과 달리 판사들이 거의 법률가 법률학자로 구성되면서 실제 법정과 같은 틀로 갔다.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이란 두 측면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 생존피해자와 가해자, 기소장 내용을 연결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조선인 피해자 전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는 피해자의 증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법정 시작 직전 일본에서 판사들이 법정에 나온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남측에는 처음 선정한 피해증언자들이 모두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어 막판에 증언자가 바뀌어져서 준비해 놓은 자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였다. 셋째는 남북의 협의시간이 너무 짧으면서도 북측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와 주제별 준비로 인해 피해자 증언이 단절적으로 정리되어서 우리 피해현실을 충분히 재현하지 못하였다는 점들이다.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수확은 역시 남북, 재일동포가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치러내었다는 점일 것이다. 남북발표가 끝난 후 재일동포지원자들의 빛나는 얼굴 빛은 정말 우리가 뭔가 해내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징표였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받은 찬사와 감사의 말들,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법정이란 형식에 매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측으로서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시간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만들고 피해현실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해 내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 온 우리의 역량을 말해 준 것이었다. 걸림돌이 되기도 한 주제별 분담이란 발상도 실로 이러한 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은 이번 행사는 검사단만이 아니라 꾸준히 증언작업과 자료발굴을 해 온 정신대연구소와 이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든 정대협, 그리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움직여준 많은 이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